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075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9,025,9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2,46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1)]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취득세 379,025,950원, 농어촌특별세 32,465,020원'만 기재하고 가산세 포함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4. 5. 23. 부동산 개발,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100주(1주의 금액 5천 원, 자본금 50만 원), 대표이사를 원고로, 주주를 C 1인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9. 25. [redacted]구 D 토지를 127억 원에 매수하고, 2016. 11. 8. 위 토지에 건축물(이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C이 2016. 12. 1. 이 사건 주식 중 60%를 원고에게, 나머지를 E에게 이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취득 간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79,025,9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2,46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원고의 형인 F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라면서 회사 설립시 직원인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C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원고에게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며 2019.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4. 5. 23. 주식회사 G의 직원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6. 12.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60주를 양도하고, E에게 나머지 40주를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 임원으로 원고만을 사내이사로 두고 있고, 2017. 5. 24.자, 2020. 5. 24.자 각 중임을 원인으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H지구 내 I블럭(J상가조합)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4. 5. 23. 설립된 회사로서, H지구 내 J상가조합과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5.경 12개의 K조합로부터 합계 약 1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및 조합원 분담금 등을 L회사에 신탁하고, 그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2014. 9. 25. 사업부지인 [redacted]구 D 토지 등을 약 135억 원에 취득하고, 이후 분양계약자들을 위하여 약 280억 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마치고, 공사비 약 225억 원, 간접공사비 약 16억 원, 기타 비용 약 110억 원을 들여 2016. 11. 8.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였다.

4) 이 사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C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업 및 H지구 내 M블록, N블록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는데, C은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인 F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위 M블록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O의 경리직원으로 최초 채용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5) C을 직원으로 채용한 F은 당시 이 사건 사업 및 H 지구 내 M블록 및 N블록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시행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 12.경 오피스텔을 준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출금 등의 상환을 마쳤다. F은 2018년경 H지구 각 신축시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L회사에 허위 계산서를 제공하여 신축시행사업과 관련한 신탁자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0. 5.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F이 위 H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O(M블록), 이 사건 회사(I블록), 주식회사 P(N블록)의 실질적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위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세무조사통지에 따라 국세청과 관할구청(세무과)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redacted]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6. 12. 1.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 2017년경 주식회사 O의 주식 100%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1,165,101,879원을 부과처분하고, 주식회사 O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2,043,133,225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되고,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16. 12. 1. 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0주 중 6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실질적 주주는 F이라고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주주인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설립 후 1달 만인 2014. 6. 25.경 토지 대금 명목으로 약 100억 원을 K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다시 2014. 9. 25.경 Q은행으로부터 약 280억 원 규모의 중도금 대출 협약까지 체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 자체의 재정 상태, 신용도와는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던 이 사건 사업의 규모는 최소 380억 원 이상에 이르고, 2016. 12. 31.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170억 원, 부채는 172억 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람은 C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이 50만 원에 불과하여 C 스스로 충분히 납입할 정도의 금액이고, F과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 등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C은 1986년생으로 당시 나이가 만 27세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위 H I블록 및 M블록, N블록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던 점, C은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인 F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위 M블록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O의 경리직원으로 최초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G의 경리직원인 C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C이 주식회사 G을 퇴사하면서 2016. 12.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60%를 원고에게, 나머지 40%를 E에게 양도한 점, 양도 당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던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본금을 자기의 돈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대출 과정에서 주주로서 관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부터 주주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F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 대표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이외에 H지구 내 I블록 및 N블록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시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F은 H지구 각 블록의 시행사업을 하며 L회사과 분양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까지 마친 점, 이후 F이 신축사업 관련 신탁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0. 5. 4.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F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F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이 사건 회사 등의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라고 인정한 점, C은 2014. 5.경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F의 지시로 신용불량자인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것이고, 2016. 12. 1. F의 지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와 E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F이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 주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고, 이 사건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2차례의 중임을 거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H지구 내 I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블럭 신축사업시행을 위하여 각종 대출계약, 대출협약 및 공사계약 등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명·날인한 점, 이 사건 회사가 C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점, F의 위 횡령 피의사건에서 원고가 F과 공모한 혐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는 F의 친동생으로, 이 사건 회사와 별도로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계산으로 보수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16. 12. 1.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인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1,165,101,879원의 부과처분을 한 점, 특히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위 증여세가 이 사건 처분 세금 액수의 3배에 가까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증여세부과처분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C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F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부터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F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명의수탁자인 C을 통해 보유하다가 2016. 12. 1. 원고에게 실제 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F과 형제 관계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F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일단의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거래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09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